

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의안 번호	1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8.29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제77조, 동법시행령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구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하여 구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하단동 SK VIEW아파트 사업부지내 포함되는 보존부적합 구유재산을 주택건설촉진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 주체인 SK건설(주)에 매각하고자 함.
- 매각대상 재산현황

소재지	지목	면적(m ²)		m ² 당 공사비가 (천원)	대장가격 (천원)	소유자
		지적	신청			
합계	5필지	1,210	1,210		781,660	
하단동 845-47	대	663	663	646	428,298	사하구
" 845-48	"	2	2	646	1,292	"
" 845-49	"	435	435	646	281,010	"
" 845-50	"	25	25	646	16,150	"
" 845-51	"	85	85	646	54,910	"

3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

공유재산관리계획

200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회계명 : 일반회계

구분		합계			상반기			하반기			비고
	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원)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원)	필지 (동수)	면적 (㎡)	추정금액 (천원)	
취득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	1.매입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	2.교환 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	3.기타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처	계	토지 건물 기타	5	1,210	781,660			5	1,210	781,660	
	4.매각	토지 건물 기타	5	1,210	781,660			5	1,210	781,660	
분	5.양여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	6.교환 으로 처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사용허가 및 대부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
2002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(7-4)

(단위 : m²,천원)

재산의 표시				추정 금액 (평가액)	처분시기	처분사유	현소유자	매수희망자 주소·성명	비고
구분	소재지	지목 (구조)	면적(m ²)						
계	5필지		1,210	781,660					
토지	하단동 845-47	대	663	428,298	2002년도 하반기	하단동 SK VIEW아파트 사업부지내에 포함되는 보존 부적합 재산임.	사하구	SK건설(주) 서울. 종로구 관훈동192-18	
	" 845-48	"	2	1,292					
	" 845-49	"	435	281,010					
	" 845-50	"	25	16,150					
	" 845-51	"	85	54,910					

위 치 도

S=1:5000

